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 강유정 · 문정복 · 김영배

강선우 · 김한규 · 서영교

이재정 • 박 정 • 박희승

임오경 · 이훈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28조제2호·제2호의2·제3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 3.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 4. 제34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규정의 준수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 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 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5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
	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
	공업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
	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
	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
	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u>1</u> . 제28조제2호·제2호의2·제3
	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
	수사항 이행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u>이 행</u>
	3.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
	의무의 이행
	4. 제34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에 따른 광고 · 선전의 제한
	<u>규정의 준수</u>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 략) <신 설>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 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 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 1. ~ 11. (현행과 같음)
- 1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

<u>한 자</u>